



제418회국회(정기회)
제 6 차 국 방 위 원 회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탄약폐기 실적·현황 상임위 보고〉

■ 강선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397호)

2024. 11.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 명 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선영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4. 9. 27.
3. 회 부 일 : 2024. 9.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탄약의 수명, 성능평가 결과 및 무기체계 변경 등을 고려하여 탄약의 폐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규정은 탄약의 종별 특성, 폭발 위험성 및 환경오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탄약의 폐기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취지이나, 정부의 예산안 및 결산이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됨을 고려할 때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탄약에 대하여 탄약의 폐기 규모 및 소요 비용 등이 국회에 보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탄약 폐기의 기준과 폐기 탄약의 종류·수량·소요비용 등을 포함한 탄약 폐기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탄약 폐기의 적절성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탄약폐기 실적·현황 상임위 보고

-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시에 탄약 폐기 기준 및 전년도 탄약 폐기현황(종류, 수량, 소요 비용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3조의3(탄약의 폐기에 대한 국회 보고) 국방부장관은 매년 「국가재정법」 제61조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 제출 시 제13조의2에 따른 탄약 폐기의 기준과 전년도 탄약 폐기 현황(종류, 수량, 소요 비용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로 제출할 수 있다.

- 군수품은 현행법 제3조1)에 따라 전비품과 통상품으로 구분되며, 탄약은 현행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전비품에 해당됨.

[전비품 통상품 구분(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

구분	내용
전비품	○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속하는 군수품(비밀도서, 비밀지도 및 비밀연구기재를 포함한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보관되거나 배치된 군수품 ○ 별표에 따른 전투장비 및 전투지원장비와 이들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장비(탑재 또는 장착되는 장비를 포함한다), 수리부속품 및 탄약류
통상품	전비품 외의 것

- 군수품은 일반적으로 현행법 제13조2)에 따라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 불용을 결정하고 불용품 중 매각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폐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군수품 중 탄약의 폐기에 대해서는 폭발 위험성 및 환경오염 가

-
- 1) 「군수품관리법」 제3조(군수품의 구분) 군수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비품(戰備品)과 통상품(通常品)으로 구분한다.
- 2) 「군수품관리법」 제13조(불용의 결정 등) ①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1.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진 군수품
 2. 국방관서나 각군이 예측할 수 있는 장래의 수요를 초과하는 재고가 있는 군수품 중 관리전환에 따라 적절하게 처분할 수 없는 군수품
 3.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할 가치가 없는 군수품
- ②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불용의 결정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군수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폐기할 수 있다.
1.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매각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매각할 수 없는 경우

능성 등이 고려되어 특별히 현행법 제13조의2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탄약의 폐기시 고려사항, 탄약 비군사화 기준 및 장소 마련, 비군사화 시설 위탁 근거 및 화약류에 대한 위탁폐기 근거 및 환경오염조사 실시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음.

[탄약의 폐기 조문 내용]

제13조의2(탄약의 폐기) ① 국방부장관은 탄약의 수명, 성능평가 결과 및 무기체계 변경 등을 고려하여 탄약의 폐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탄종별 특성, 수량, 폭발 위험성 및 환경오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탄약의 폐기를 위한 <u>탄약 비군사화</u>(본래의 군사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절단·파괴·변형 또는 마멸 등을 통하여 원형을 변경하거나 군용표지 등을 제거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u>기준과 탄약 비군사화 장소를 정하여야 한다.</u> ③ 국방부장관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탄약의 폐기를 위하여 <u>탄약 비군사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u>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설치한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과 제4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탄약 비군사화 기준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탄약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폐기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u>탄약 비군사화 장소에서 탄약을 폐기할 수 있다.</u>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폐기하려는 탄약 중 <u>화약류·자탄류 및 추진제</u>(이하 이 조에서 “화약류등”이라 한다)는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라 군용화약류의 제조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u>위탁하여 폐기할 수 있다.</u> ⑦ 제6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화약류등의 폐기를 위탁할 경우 국방부장관은 <u>화약류등의 위탁 처리 절차·방법·시설기준 및 탄약 안전처리기준을 따로 정하고, 화약류등을 위탁받아 폐기하려는 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 탄약 비군사화기준과 탄약 안전처리기준에 맞게 시설을 운용하며, 그 처리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⑧ 국방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위탁업체에 의한 폐기가 모두 종료될 때까지 관련 <u>군인, 군무원 또는 공무원이 참관하여 감독하도록 하는 등 화약류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 ⑨ 국방부장관은 탄약 비군사화 장소에 대하여 <u>매 3년마다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u> 다만, 탄약의 폐기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탄약 비군사화 장소의 경우에는 그 장소를 폐쇄하여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u>환경오염정화</u>를 하여야 한다.
--

- 개정안은 국방부의 세출예산으로 구매되어 훈련·교육용 등으로 사용되어지고 난 탄약의 폐기 기준 및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되,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임.
 - 첫째, 탄약은 다른 군수품과 마찬가지로 교육용탄약 사업 등³⁾을 통해 획득되어지고, 비군사화 후 재활용(제철류, 화약류 등) 또는 매각되어 세입예산에 편입된다는 점에서 예결산 심사권을 갖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탄약 폐기기준의 적절성 및 탄약의 폐기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통해 예산낭비 여부, 예산절감 가능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탄약은 수명, 성능평가 결과 및 무기체계 변경 등을 고려하여 폐기여부가 국방부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데, 개정안은 탄약의 폐기에 대한 사후적 통제라는 점에서 현재 국방부의 탄약 관련 업무의 재량을 크게 침범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셋째,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탄약 성능평가, 탄약비축량, 탄약 사용 훈련횟수 및 무기체계 변경 등 비공개 보고가 필요한 경우를 위

3) 지상교육용탄약(2339-301), 함포교육용탄약(2339-302), 항공교육용탄약(2339-303), 주요기관 교육용탄약(2339-304), 전투예비탄약(2532-300) 등

한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넷째, 국방위원회 소관 다른 입법례를 볼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히 보고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률에 직접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입법례 현황]

구분	내용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승인받은 해당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및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과 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현황을 매년 5월 31일까지 <u>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u> 하여야 한다.
방위 사업법	제15조의2(신속소요의 결정 등) ① 합동참모의장은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신속소요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신속소요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u>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u> 하여야 한다. 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수준, 방위산업육성효과,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비용(무기체계의 획득부터 운영유지까지 소요되는 수명주기비용을 포함한다)대비 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한 선행연구(先行研究)를 거친 후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해외파병 등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긴급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있거나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방위사업청장은 같은 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u>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u> 하여야 한다.

병역법	제19조(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려면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대책방안 등을 <u>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u>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경우에는 추후 보고할 수 있다.
-----	---

□ 다만,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예산으로 구매되는 탄약의 폐기여부가 국방부의 재량으로 이루어지므로 사후적으로 국회에서 그 적절성 여부 등을 논의함으로써 탄약폐기 기준 및 규모 등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있다고 보여지나, 현재도 탄약을 포함하여 모든 군수품의 관리 현황 등에 대해서 국회는 국정감사, 예결산 심사, 정책질의·현안질의 및 이를 위한 자료요구, 서면질의 등 정부의 정책에 대한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어 개정안의 취지는 일정 부분 달성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방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첫째,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에게 탄약의 수명, 성능평가 결과 및 무기체계 변경 등을 고려하여 탄약의 폐기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는 정부 및 군이 탄약폐기 업무의 다양한 상황과 폐기량의 다수성 등을 고려하여 탄약 폐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량을 발휘하라는 취지인바, 개정안과 같이 탄약의 폐기 기준 및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추가하는 것은 「군수품관리법」의 입법 취지에 반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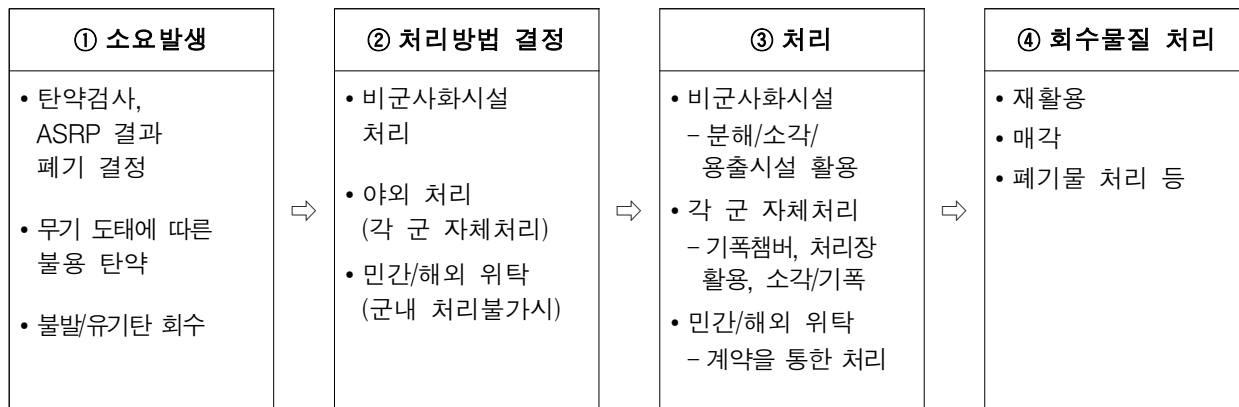
둘째, 또한, 각 군의 주요 전투장비(전차, 전함, 전투기 등)를 포함한 모든 군수품은 국회로부터 예산안 심의를 거쳐 획득·운용되며 국유재산에 해당하나, 폐기 시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장비에 탑재·장착되어 운용되는 ‘탄약’의 폐기현황만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셋째, 현재 매년 결산보고 시 폐기에 소용되는 비용 등을 보고하고 있는바, 국회(상임위, 의원실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폐기된 탄약의 종류 및 수량 등에 관하여 국회에 대면설명 및 보고하고 있는 현행 절차를 유지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문 의 처
02)6788-5308

※ 참고자료

○ 탄약 폐기(비군사화) 절차



○ 탄약 비군사화 현황(연평균)

구분		시설처리	야외처리	계
처리량	발수	260만여 발	90만여 발	350만여 발
	톤수	2,420여 톤	980여 톤	3,400여 톤

○ 탄약 비군사화 시설 현황

• 친환경 비군사화 시설(충북 영동)

구분	내폭형소각시설	일반탄분해시설	용출시설	대형탄분해시설	내열형소각시설
운영시기	'08. 1월	'12. 3월	'12. 12월	'22.6월	
처리능력	연간 650톤	연간 10,000 톤	연간 300 톤	연간 176 톤	연간 990 톤
처리탄약	소구경 탄약, 신관류	20~155mm 이하	포병 탄약류	1,000mm 이하 (추진기관 등)	로켓추진기관, 장약류

* 비군사화 시설 운영 : 5년 단위 민간 위탁운영('22~'26년 : 삼양화학공업(주) / 517억 원)

* 추가건설 계획 : 자탄분해시설('23~'26년/195억 원), 가열형 기폭처리시설('26~'29년/198억 원)

• 야외처리 시설(폭발물처리장)

구분	육 군 (7개소)							공군(1개소)
	50탄약대대	55탄약대대	2탄약창	5탄약창	6탄약창	8탄약창	11탄약창	필승사격장
위치	경기 안산	경기 연천	경북 영천	충북 제천	전북 임실	충북 영동	세종	강원 태백
1회 처리능력	500 lbs	450 lbs	160 lbs	120 lbs	80 lbs	250 lbs	400 lbs	5,000 lbs